## 채권 가압류 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특별시 ○○구 ○○○○로 ○○○○

채무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특별시 ○○구 ○○○○로 ○○○○

제3채무자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 ○○특별시 ○○구 ○○○○로 ○○○○

>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특별시 ○○구 ○○○로 ○○○○

> > 청구금액: 000,000,000 원

OOOO지방법원 기중 채권 가압류 명령 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 ○○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채무자 주식회사 솔스티스종합건설 ○○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제3채무자 1.00 주식회사 00특별시 00구 0000로 0000 대표이사 〇〇〇

2. 주식회사 ○○○ ○○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

청 구 금 액

금000,000,000원정 (물품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피보전채권의 요지

2000년0월부터 2000년0월사이에 채무자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등의 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한 위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 청 이 유

- 1. 채권자는 ০০에서 목재, 합판, PB(Particle Board),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장기업으로서 채무자와는 20০০년 ০০월부터 물품인수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판, 목재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별지 '거래계약서' 사본 참조).
- 2.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들에게 공사를 발주한 업체들로부터의 공사대금과 기성 회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2000년 0월까지 0억여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미수금으로 남겨두고, 그후 거래를 하면서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차일 피일 대금 결제를 약속한 날짜를 미루며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별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금액확인 내역' 사본 참조).
- 3. 채무자는 2000.0.00. 과 2000.00.00.에 채권자에게 '미지급금 지급계획' 공문을 보내어,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약속을 하였고, 그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별지 '미지급금 지급계획' 사본 참조).

- 4.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그 동안 신뢰를 지키며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하여 왔으나, 채무자의 계속적인 약속 불이행과 물품대금의 지급 불이행이 장기화 됨에 따라, 더 이상 채무자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 받고자, 귀원에 지급명령 내지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귀원을 통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한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할 담보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1. 거래계약서 사본	1통
2. 세금계산서 사본	1통
3. 거래명세서 금액확인 사본	1통
4. 지불이행각서 사본	각 1통
5.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1통

6. 위임장

20 〇 년 월 일

채권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OOOO지방법원 귀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 금액: 000,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가지는 공사대금, 기성금, 용역비 등의 명목의 모든 채권 중 아래 제3채무자별로 특정한 금액에 달하기 까지의 금액